



제1749호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2 3 호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2
○ 공	고 제 2 2 6 호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공시송달	세 무 1 과	111
○ 공	고 제 2 3 2 호	취득세 2월 공시송달	세 무 1 과	122
○ 공	고 제 2 3 4 호	2023년 2월 등록면허세 공시송달	세 무 1 과	124
○ 공	고 제 2 4 2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126
○ 공	고 제 2 4 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128
○ 공	고 제 2 4 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131
○ 공	고 제 2 5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작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136
○ 공	고 제 2 5 5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북 지 정 책 과	137
○ 공	고 제 2 5 6 호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일 자 리 정 책 과	146
○ 공	고 제 2 5 7 호	유홍주점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156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1 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58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2 호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66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3 호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77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4 호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93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5 호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04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23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 관 부 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보 육 정 책 과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보 전 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 품 위 생 과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 품 위 생 과

2023. 2. 1.
남 동 구 청 장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 2. 14.(화) ~ 2. 22.(수)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보육정책과)
-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과)
-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과)
-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4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법정인력(지방의회정책지원관)을 정원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정원(직급)을 조정하여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30명 ⇒ 1,335명 (증 5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0→1,33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25→1,330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68	37	2	8	1	20
6급 이하 계	1,247→1,253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30명”을 “1,3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02명”을 “1,30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8명”을 “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330명”을 “1,3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30					
	2급	1	1				
	4급	8	6	1	1		
	5급	68	37	2	8	1	20
	6급 이하 계	1,253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1,330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335명</u> ----- -----.
1. 집행기관 : <u>1,302명</u>	1. ----- <u>1,303명</u>
2. 의회사무기구 : <u>28명</u>	2. ----- <u>32명</u>
3. 총계 : <u>1,330명</u>	3. ----- <u>1,335명</u>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나. 관련 조문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순 증 : 1,330명 → 1,335명(5명 증원)
- 2023년 예산의 직급별 인건비(기본급, 수당) 및 물건비(직급보조비) 등 적용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1,142,537천원(2023년 ~ 2027년)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9개월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74,797	236,559	240,107	243,709	247,365	1,142,537
재원 조달		174,797	236,559	240,107	243,709	247,365	1,142,53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174,797	236,559	240,107	243,709	247,365	1,142,537
	지방세	174,797	236,559	240,107	243,709	247,365	1,142,537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1.5%로 가정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5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12조제9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 및 신설)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주민투표법」(2022. 4. 26. 개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0조제2항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성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일자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나 거소”를 “생년월일, 주소”로,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청구의 대상, 취지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

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20조(종전의 제13조) 제2항 본문 중 “동조”를 “같은 조”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수리여부”를 “수리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결정을 하기”를 “결정이”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6조) 중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을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남동구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남동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 ----- <u>외국인</u> ----- -----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u>외국인</u> 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사람</u> 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 ----- ----- -- <u>외국인</u>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u>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u>	
2.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
합 (개정 2009. 6. 19, 일부개
정 2015. 10. 8, 2019. 6. 28.,
2021.12.23.)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
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
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
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
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
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
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제7조(서명요청기간) -----
----- 법 제
10조제2항의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
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일자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생년월일, 주소 ----- 청구의 대상, 취지 및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청구인서명부(전

분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해촉한다.. (개정 2009.

6. 19, 전부개정 2017. 5. 10.)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
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
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
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
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
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
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

<신 설>

<신 설>

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신 설>

-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에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신 설>

<신 설>

제13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20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 조 -----

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5조 (생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남동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14일 이내-----

수리 여부-----.

-.

③ -----

----- 기간 내-----

----- 결

정이 -----

--.

제21조·제22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23조(공표방법 등) -----

---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안 제12조) 심의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에 대한 추계 곤란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최민영

[참고자료]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6.>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권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권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6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역사관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에서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소래역사관 관리·운영 위탁 시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래역사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12조(구성) 제6항
- 소래역사관 관리·운영 수탁기관 범위 확대
: 조례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제2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차레만”을 “차레”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경우「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개관 및 휴관)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4. (생략)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개관 및 휴관) ----- ----- -----. 1. ~ 4. (현행과 같음) 5. -----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6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생략)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대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9. 6. 28.)

⑤ (생략)

<신 설>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역사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역사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

제6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

-----.

제1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차례-----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 경우 ----

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남동문화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구성)
-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세출 증가 없음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7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소래아트홀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에서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5조(운영위원회) 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홀 운영을 제2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제5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홀 운영을 제2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2. 3. (생 략)

③ ④ (생 략)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남동구-----

2. 3.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위원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세출 증가 없음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2718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수탁자(점장 김은주)의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수탁자의 의무) 위반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자 함
-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함(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 주요내용

○ 위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설치(개관)일	위탁기간 (예정)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소래로 633, 남동구청 별관 1층	189.99㎡ (지상1층)	'10.09.01	'23.4.1. ~ '26.3.31.

※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및 관리
 - 장난감·도서 등의 대여 운영
 - 장난감월드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위탁 시설·장비·재산 관리 등
- 소요예산 : 863,550천원(3년간)

□ 관련근거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부.
- 참고2 : 위탁운영자 선정 세부심사기준표 1부.
- 참고3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안) 1부.
- 참고4 : 관련법령(발췌) 1부. 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운영비(인건비,시설운영비,장난감구입비 등)

나. 관련조문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운영계획에 따른 소요액
- 비용추계의 기간 : 향후 3개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5년(3년)
- 발생비용 : 863,55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수입 : 837,630천원(시비 50% : 구비 50%)
- 사업수익(연회비 수입) 등 : 25,92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79,430	287,770	296,350	863,550
보조금수입			271,000	279,130	287,500	837,630
사업수입			8,400	8,600	8,800	25,800
잡수입(이자수입등)			30	40	50	120
세 출			279,430	287,770	296,350	863,550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279,430	287,770	296,350	863,550
재원 조달			279,430	287,770	296,350	863,550
의존 재원	소 계		271,000	279,130	287,500	837,630
	보 조 금	시비	135,500	139,565	143,750	418,815
		구비	135,500	139,565	143,750	418,815
	지방교부세		-	-	-	-
	조정교부금		-	-	-	-
자체 수입	사업수익 (회원 연회비)		8,400	8,600	8,800	25,800
지 방 채			-	-	-	-
기 금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기 타 (이자수입 등)			30	40	50	120

※ 연도별 인상률 약 3%로 가정함

비용 세부 추계표(2023년 운영비 소요액)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점장 1명,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단기계약직 1명		279,430
인건비 (75%)	급여	-점장:2,220,700원×1명×12월 -정규직:2,108,300원×2명×12월 -계약직:9,620원×209시간×3명×12월 -단기계약직:9,620원×104시간×1명×11월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 28,050천원	점장 (보육교사 6호봉수준) 정규직 (보육교사 2호봉수준) 계약직 (2023년 최저시급)	188,683
	제수당	-명절수당 200,000원×3명×2회 -처우개선비 5,880천원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11,060천원		18,140
	후생경비	-종사자 예방접종, 방역용품 지원 등		2,650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비 (25%)	관리 운영비	-장난감대여프로그램 운영비, 보안시스템 사용료, 소독및방역비, 정수기 등 렌탈비용 -장난감봉투 제작, 장난감수리부품 구입 등 소모품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23,828
	재산 조성비	-장난감 등 구입 24,000천원 -매장개보수비 6,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천원		32,000
	사업비	-회원카드 제작		1,500
	업무 추진비	-직책보조비(점장) 150,000원×1명×12월 -간담회비, 유관기관 협력 등		4,190
	예비비 및 기타	-회원가입연회비 반환, 이자수입 및 예비비		8,439

[참고자료 1]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요 지

□ 관련근거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제11조(위탁계약) 및 제14조(위탁의 해지)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승인 및 동의)

□ 재위탁¹⁾ 배경

- 현 수탁자의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 해지
- ¹⁾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위탁

□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 민간위탁 대상시설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위탁 만료일	2023년 지원사업비	1일평균 대여실적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소래로 633, 1층 (구청 별관)	189.99㎡	2023.2.28	271,000천원 (시50:구50)	228건 ('22.12월말 기준)

- 주요기능 : 영유아 나이별 신체발달 단계에 맞춰 다양한 놀이, 학습 자료 구비 대여 등을 통한 영유아의 신체·정신적 발달 기여 및 부모의 육아비용 경감 도모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의회 민간위탁 보고 : 2023. 2월중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2023. 2월 ~ 3월중
 - 위탁운영자 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2023. 3월중)
 - 위탁계약 체결 : 2023. 3월중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 관련근거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 제11조(위탁계약) 및 제12조(수탁자의 선정)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추진방향

- 공개경쟁 원칙으로 참여기회 확대 및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절차를 통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 민간위탁 대상시설 기본현황(2023. 1월현재)

시설명	소재지	규모	위탁만료일	비고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소래로 633, 1층 (구청 별관)	189,99m ²	2023.2.28	

- 종 사 자 : 총 6명 / 점장1명, 일반직 2명, 아르바이트 3명
- 운영시간 : 매주 화~토, 10:00~18:30
- 주요기능 : 영유아 놀이·학습 자료(장난감,도서,영상자료) 및 백일·돌상차림 대여 등 영유아의 신체·정신적 발달 기여 및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 경감

○ 운영실적

구분	장난감 등 대여품 보유수(개)	대여실적(회)			1일평균 대여건수 (증감)
		총 대여실적	월평균	1일평균	
2021년	9,869	39,158	3,263	157	+71건
2022년	10,467	57,300	4,775	228	

2 신규 위탁운영자 모집 계획☐ 위탁운영자 신청자격**[법인·단체]**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보육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에 기준에 따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개 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시설장내장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민간위탁보조금(시비 50%, 구비 50%)
- 종사자 보수 : "인천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이용료 등)의 활용은 시설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시설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가 매년 실시하는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대한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인천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선정심사 원칙

- 심사기준은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르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를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선정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시설 운영관리 사업계획 대비 실적 등)	30
■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업무경력, 운영 의지 등)	25
■ 위탁체의 장난감대여점 운영계획(사업계획, 평가계획)	3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 하며, 원활한 위탁 업무를 위하여 재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점장내정자로 함)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위탁체의 시설운영 계획(1순위),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 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이거나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사결과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선정 결과 공개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게시)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추진일정

- 의회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2023. 2월중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023. 2~3월중(20일 이상 공고)
 - 공고방법 : 구청 및 각 동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공고문 게재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접수기간 : 공고만료일 업무마감시간까지
 - 접 수 처 :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 인터넷 및 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3. 3월중
- 위탁계약 체결 : 2023. 3월중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끝.

[참고자료 2]

위탁운영자 선정 세부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2. 위탁체의 시설운영 및 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 • 정기적 실내청소 및 소독, 장난감 세척 • 이용자(회원) 관리 및 연체, 배상 처리 • 자원봉사 활용	10
		- 사업계획 대비 실적	• 시설안전관리, 장난감소독 및 세척 • 회원관리 : 신규, 갱신, 탈퇴, 연체 • 장난감 물품관리 • 직원교육 및 연수 •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3.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	25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10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 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4. 위탁체의 장난감 대여점 운영계획	30	- 사업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	• 장난감, 도서, 영상물 대여사업 • 장난감 등 보유물품 관리계획 (구입, 유지보수, 폐기) • 직원 서비스 교육계획 • 회원관리 계획 : 신규, 갱신, 탈퇴, 연체 회원 관리 등	20
		- 평가계획	•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
5. 위탁체의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운영계획, 시설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참고자료 3]

남동구 공고 제 2023 - 호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위탁운영자(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2. .

남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위탁기간 (예정)	비고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남동구청 별관1층	189.99㎡	23.4.1. ~26.3.31.	

2. 운영현황 (2022.12월말 기준)

종사자	대여품 보유 수	총회원수	일평균대여수	비고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10,467점	1,846명	228건	

3. 위탁기간 : 23. 4. 1. ~ 26. 3. 31.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3. 2. 22.(수) ~ 3. 14.(화)
- 접수기간 : 2023. 3. 8.(수) ~ 3. 14.(화) 오후 6시까지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신청인(신분증, 자격증 원본 지참) 방문접수 (*우편·인터넷·대리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별첨] 및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 ① 신청서류 총 16부 (원본1부, 사본15부)
 - ②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약5분 분량)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5. 신청 자격 요건

【 법인·단체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보육 및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안내지침에 기준에 따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 인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6. 신청 제외대상 (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민간위탁보조금(시비 50%, 구비 50%)
- 종사자 보수 : “인천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 지침”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이용료 등)의 활용은 시설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시설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가 매년 실시하는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인천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안내 지침”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시 위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시설 운영관리 사업계획 대비 실적 등)	10
■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업무경력, 운영 의지 등)	35
■ 위탁체의 장난감대여점 운영계획(사업계획, 평가계획)	4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9.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및 결과 공개

-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점장내정자로 함)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위탁체의 시설운영 계획(1순위), 위탁체시설장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이거나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사결과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선정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20일이상 게시)

10.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청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1.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장난감 대여점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 시 발표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보육정책과(☎453-5841, 5844)에 문의

[관련 법률]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①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목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9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정비(안 제2조 ~ 제6조, 제8조,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 및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8조 ----- ----- ----- ----- ----- -----.
제2조(기능)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 ----- ----- -----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환경행정분과위원회와 구민참여분과위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원회의 분과위원장이 각각 된다.

③ (생 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행정분과위원회, 구민참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분과위원회: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이행점검 등

2. 구민참여분과위원회: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보호 관련 사업 활동, 환경교육, 환경관련 홍보활동 등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 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8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항목: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 환경관련 사업비 등
2. 지원방법: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구성)
- 제8조(수당과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신 현 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20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2.11.1.자 조직개편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
-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법으로 약칭 수정

☐ 주요내용

- 제4조제2호의 「식품위생법」을 법으로 약칭 수정(안 제4조)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소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소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략)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4. (생략)	제4조(기금의 조성)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4.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기금업무 담당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④ ⑤ (생략)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담당국장-----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장 지 경 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21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2.11.1.일자 조직개편으로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장 지 경 란

[참고자료]

□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의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26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 (주)가*시*템 외 552명
- 서류의 송달지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3.1.31.일을 2023.2.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

남 동 구 청 장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공시송달

(단위:원)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1	114001 2023 01 1 800 050739	(주)가**시**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	114001 2023 01 1 510 003344	감**평**법**정**	110111-*****	41,710	수령인 없음
3	114001 2023 01 1 522 012466	주**회**강**건**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4	114001 2023 01 1 800 048062	주**회**강**건**산**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5	114001 2023 01 1 650 031105	주**회** **발**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6	114001 2023 01 1 650 029423	주**회** **발**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7	114001 2023 01 1 710 044579	주**회**고**	134111-*****	27,810	수령인 없음
8	114001 2023 01 1 710 046168	(주)그**메**	134111-*****	18,540	수령인 없음
9	114001 2023 01 1 800 051213	(주)기**피**에**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	114001 2023 01 1 710 041345	주**회** **동**합**경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11	114001 2023 01 1 710 041306	주**회** **동**합**경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12	114001 2023 01 1 660 033003	주**회** **스**원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3	114001 2023 01 1 800 048833	주**회**다**트**이**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4	114001 2023 01 1 510 003396	주**회**대**통**	134111-*****	41,710	수령인 없음
15	114001 2023 01 1 710 041136	대**와**산**개**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16	114001 2023 01 1 800 048063	주**회**대**주**건**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17	114001 2023 01 1 660 034307	주**회** **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8	114001 2023 01 1 800 048884	(주)더**유**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9	114001 2023 01 1 700 039995	(주)더**음**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0	114001 2023 01 1 800 051048	더**은**동**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1	114001 2023 01 1 710 044285	(주)도**산**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2	114001 2023 01 1 800 056235	(주)동**산**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23	114001 2023 01 1 800 055374	(주)동**산**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24	114001 2023 01 1 800 054545	(주)동**산**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25	114001 2023 01 1 800 051077	라**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6	114001 2023 01 1 690 037817	(주)랩**디**인	121111-*****	27,810	수령인 없음
27	114001 2023 01 1 690 036300	(주)랩**디**인	121111-*****	41,710	수령인 없음
28	114001 2023 01 1 800 048247	레**포**(주)	110111-*****	41,710	수령인 없음
29	114001 2023 01 1 710 044372	(주)로**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0	114001 2023 01 1 710 045557	(주)로**스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31	114001 2023 01 1 660 032763	주**회**태**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2	114001 2023 01 1 510 006106	주**회**메**파**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3	114001 2023 01 1 800 048862	주**회**미**컴**니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4	114001 2023 01 1 800 049952	주**회**바**디**디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5	114001 2023 01 1 560 021770	뱅**어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6	114001 2023 01 1 800 048904	주**회** **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7	114001 2023 01 1 690 038696	(주)베**스**스**틱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38	114001 2023 01 1 690 038645	(주)베**스**스**틱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39	114001 2023 01 1 690 037854	(주)베**스**스**틱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0	114001 2023 01 1 690 037853	(주)베**스**스**틱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1	114001 2023 01 1 800 048130	주**회**라**필**	134811-*****	41,710	수령인 없음
42	114001 2023 01 1 800 048604	주**회**보**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3	114001 2023 01 1 710 043822	주**회**보**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4	114001 2023 01 1 800 051615	(주)복**	121111-*****	27,810	수령인 없음
45	114001 2023 01 1 710 043824	주**회** **티**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6	114001 2023 01 1 710 043826	주**회** **티**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7	114001 2023 01 1 510 002417	주**회**가**허**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8	114001 2023 01 1 800 046821	(주)삼**엔**니**링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49	114001 2023 01 1 551 019150	주**회**상**중**개**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50	114001 2023 01 1 710 044277	(주)새**기**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1	114001 2023 01 1 710 043721	주**회** **진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2	114001 2023 01 1 800 048116	(주)성**이**지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53	114001 2023 01 1 710 042189	세**테**주**회**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54	114001 2023 01 1 710 044592	세**테**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5	114001 2023 01 1 710 041583	세**시**템**지**어**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56	114001 2023 01 1 710 044404	주**회** **원**레**팅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7	114001 2023 01 1 540 016757	(주)세**브**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8	114001 2023 01 1 690 037278	주**회**세**건**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9	114001 2023 01 1 800 048484	(주)센**리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60	114001 2023 01 1 583 027307	(주)솔**몬**이**중**건**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61	114001 2023 01 1 800 048842	(주)송**	135811-*****	41,710	수령인 없음
62	114001 2023 01 1 510 001967	주**회**수**리**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63	114001 2023 01 1 710 042118	주**회**신**그**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64	114001 2023 01 1 710 044508	(주)아**마**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65	114001 2023 01 1 710 043641	(주)아**트**코**아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66	114001 2023 01 1 800 052707	(주)아**티**이**I**K*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67	114001 2023 01 1 800 051640	(주)아**웨**브**루**스**리**	124411-*****	27,810	수령인 없음
68	114001 2023 01 1 800 051320	주**회** **울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69	114001 2023 01 1 660 033111	주**회** **울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70	114001 2023 01 1 530 013394	주**회**에**알**합**설	200111-*****	69,520	수령인 없음
71	114001 2023 01 1 800 055447	(주)에**에**코**아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72	114001 2023 01 1 800 056261	(주)에**파**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73	114001 2023 01 1 710 044701	(주)에**치**엔**니**링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74	114001 2023 01 1 510 007422	(주)에**치**데**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75	114001 2023 01 1 800 052377	주**회**에**치**이**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76	114001 2023 01 1 800 049263	주**회**에**치**이**로**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77	114001 2023 01 1 580 025066	주**회**에**캠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78	114001 2023 01 1 800 051862	주**회**에**캠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79	114001 2023 01 1 800 051361	주**회**엠**스**토**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80	114001 2023 01 1 660 034139	주**회**엠**스**토**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81	114001 2023 01 1 690 037300	(주)엠**이**업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82	114001 2023 01 1 690 037301	(주)엠**이**업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83	114001 2023 01 1 800 047990	주**회**왕**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84	114001 2023 01 1 551 020102	주**회**원**코**아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85	114001 2023 01 1 800 050539	주**회**유**코**아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86	114001 2023 01 1 710 042130	주**회**유**솔**션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87	114001 2023 01 1 800 048839	주**회**유**티**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88	114001 2023 01 1 650 028884	(주)을**함**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89	114001 2023 01 1 650 028883	(주)을**함**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90	114001 2023 01 1 650 029324	(주)을**함**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91	114001 2023 01 1 510 001440	이**산**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92	114001 2023 01 1 560 020806	주**회** **앤**스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93	114001 2023 01 1 510 006127	주**회**이**스**스**어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94	114001 2023 01 1 710 043781	(주)일**전**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95	114001 2023 01 1 710 042106	(주)일**전**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96	114001 2023 01 1 800 051669	(주)일**기**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97	114001 2023 01 1 580 025490	(주)장**쇼**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98	114001 2023 01 1 660 033764	(주)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99	114001 2023 01 1 710 043810	주**회**제**바**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0	114001 2023 01 1 800 050312	주**회**제**바**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1	114001 2023 01 1 800 048134	제**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02	114001 2023 01 1 710 043702	제**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3	114001 2023 01 1 710 042128	제**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04	114001 2023 01 1 710 043813	제**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5	114001 2023 01 1 710 043833	제**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6	114001 2023 01 1 521 011332	주**회**제**에**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7	114001 2023 01 1 800 051999	(주)제**게**인**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8	114001 2023 01 1 800 050024	(주)지**씨**에**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09	114001 2023 01 1 800 053484	(주)지**씨**에**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10	114001 2023 01 1 530 015560	(주)직**홀**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111	114001 2023 01 1 530 013897	(주)직**홀**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12	114001 2023 01 1 690 034958	주**회**천**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113	114001 2023 01 1 510 000542	주**회**천**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114	114001 2023 01 1 510 000068	주**회** **디**인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115	114001 2023 01 1 510 005272	주**회** **디**인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16	114001 2023 01 1 530 013383	(주)컬**미**유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17	114001 2023 01 1 710 044168	주**회** **패**플**이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18	114001 2023 01 1 800 048321	주**회** **이**루**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19	114001 2023 01 1 660 034138	주**회** **이**루**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20	114001 2023 01 1 800 048528	주**회** **이**루**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21	114001 2023 01 1 800 052766	주**회** **어**퍼**	121111-*****	27,810	수령인 없음
122	114001 2023 01 1 800 050895	(주)큐**큐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123	114001 2023 01 1 530 013740	주**회**제**에**스**리**(*HoeC*.Ltd)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24	114001 2023 01 1 550 018665	주**회**제**에**스**리**(*HoeC*.Ltd)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25	114001 2023 01 1 710 044907	주**회**탐**티**솔**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26	114001 2023 01 1 710 041493	주**회**탐**티**솔**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127	114001 2023 01 1 800 052456	(주)탐**이**크**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28	114001 2023 01 1 510 005979	주**회**태**글**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29	114001 2023 01 1 800 051035	주**회**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30	114001 2023 01 1 800 051702	주**회**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31	114001 2023 01 1 710 044660	주**회** **영**공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32	114001 2023 01 1 800 053294	주**회**태**	135811-*****	27,810	수령인 없음
133	114001 2023 01 1 800 048720	투**즈**주**회**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34	114001 2023 01 1 710 043820	투**즈**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35	114001 2023 01 1 800 050310	주**회**파**스**레**글**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36	114001 2023 01 1 800 050272	주**회**파**스**레**글**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37	114001 2023 01 1 660 032772	주**회**파**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38	114001 2023 01 1 800 047430	주**회**프**팜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139	114001 2023 01 1 800 048539	주**회**프**팜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40	114001 2023 01 1 660 034297	플**스**레**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41	114001 2023 01 1 660 032558	플**스**레**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142	114001 2023 01 1 660 032774	플**스**레**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43	114001 2023 01 1 510 001740	주**회**하**투**리**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44	114001 2023 01 1 510 006218	주**회**하**투**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45	114001 2023 01 1 800 051254	(주)한**에**에**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46	114001 2023 01 1 800 048855	(주)한**에**에**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47	114001 2023 01 1 800 053185	(주)한**금**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48	114001 2023 01 1 655 032107	주**회** **브**퍼**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149	114001 2023 01 1 710 041894	(주)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50	114001 2023 01 1 710 043806	(주)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51	114001 2023 01 1 690 038114	지**상	740405-*****	27,810	수령인 없음
152	114001 2023 01 1 710 044719	제**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53	114001 2023 01 1 800 049870	김**현	721224-*****	27,810	수령인 없음
154	114001 2023 01 1 800 048552	김**현	721224-*****	41,710	수령인 없음
155	114001 2023 01 1 510 007001	이**섭	781115-*****	27,810	수령인 없음
156	114001 2023 01 1 710 044805	김**년	820120-*****	27,810	수령인 없음
157	114001 2023 01 1 550 017155	에**디**버**트**식**사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158	114001 2023 01 1 650 029271	백**인	640524-*****	41,710	수령인 없음
159	114001 2023 01 1 550 018470	주**회** **경	141311-*****	27,810	수령인 없음
160	114001 2023 01 1 510 006584	우**택	700325-*****	27,810	수령인 없음
161	114001 2023 01 1 510 006358	신**필	550708-*****	27,810	수령인 없음
162	114001 2023 01 1 510 002509	신**필	550708-*****	41,710	수령인 없음
163	114001 2023 01 1 690 037106	양**명	530120-*****	27,810	수령인 없음
164	114001 2023 01 1 530 013354	최**민	580819-*****	41,710	수령인 없음
165	114001 2023 01 1 690 036442	윤**무	770515-*****	41,710	수령인 없음
166	114001 2023 01 1 530 013669	박**미	740805-*****	41,710	수령인 없음
167	114001 2023 01 1 690 038131	조**진	900214-*****	27,810	수령인 없음
168	114001 2023 01 1 655 032287	오**희	711111-*****	27,81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169	114001 2023 01 1 800 052930	김**식	540401-*****	27,810	수령인 없음
170	114001 2023 01 1 690 038038	정**미	590107-*****	27,810	수령인 없음
171	114001 2023 01 1 710 045705	(주)그**메**	134111-*****	18,540	수령인 없음
172	114001 2023 01 1 800 051948	주**회**그**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73	114001 2023 01 1 690 035974	엄**영	941108-*****	41,710	수령인 없음
174	114001 2023 01 1 710 044199	이**미	680119-*****	27,810	수령인 없음
175	114001 2023 01 1 710 042418	김**숙	680217-*****	41,710	수령인 없음
176	114001 2023 01 1 530 013712	황**길	810403-*****	41,710	수령인 없음
177	114001 2023 01 1 690 035593	서**희	830930-*****	41,710	수령인 없음
178	114001 2023 01 1 660 032952	도**칠	550201-*****	41,710	수령인 없음
179	114001 2023 01 1 510 007225	이**안	791216-*****	27,810	수령인 없음
180	114001 2023 01 1 510 001071	이**안	791216-*****	41,710	수령인 없음
181	114001 2023 01 1 510 001944	고**수	791110-*****	41,710	수령인 없음
182	114001 2023 01 1 510 003444	고**수	791110-*****	41,710	수령인 없음
183	114001 2023 01 1 510 001492	윤**건	821019-*****	41,710	수령인 없음
184	114001 2023 01 1 690 036261	경**현	590324-*****	41,710	수령인 없음
185	114001 2023 01 1 530 013651	이**운	900627-*****	41,710	수령인 없음
186	114001 2023 01 1 800 049689	이**호	840910-*****	41,710	수령인 없음
187	114001 2023 01 1 800 048766	이**호	840910-*****	41,710	수령인 없음
188	114001 2023 01 1 700 040545	한**호	920408-*****	27,810	수령인 없음
189	114001 2023 01 1 800 050551	김**일	581213-*****	27,810	수령인 없음
190	114001 2023 01 1 660 032759	은**호	690815-*****	41,710	수령인 없음
191	114001 2023 01 1 522 012180	여**지	951227-*****	27,810	수령인 없음
192	114001 2023 01 1 690 035919	김**택	781026-*****	41,710	수령인 없음
193	114001 2023 01 1 800 049032	넬**생**공**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94	114001 2023 01 1 690 035689	신**진	740625-*****	41,710	수령인 없음
195	114001 2023 01 1 660 033406	농**회**법**주**회**신**에**팜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196	114001 2023 01 1 660 034326	농**회**법**주**회**신**에**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197	114001 2023 01 1 530 013755	전**진	891004-*****	41,710	수령인 없음
198	114001 2023 01 1 510 001499	류**재	910429-*****	41,710	수령인 없음
199	114001 2023 01 1 510 000482	다**보**투**(주)	121111-*****	69,520	수령인 없음
200	114001 2023 01 1 540 016243	이**길	671014-*****	41,710	수령인 없음
201	114001 2023 01 1 710 044513	다**메**텍**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02	114001 2023 01 1 800 048571	다**메**텍**주**회**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203	114001 2023 01 1 690 036297	박**숙	640412-*****	41,710	수령인 없음
204	114001 2023 01 1 690 038307	박**숙	640412-*****	27,810	수령인 없음
205	114001 2023 01 1 522 011950	한**식	800720-*****	41,710	수령인 없음
206	114001 2023 01 1 530 015438	다**부**산**개**인**식**사	124411-*****	27,810	수령인 없음
207	114001 2023 01 1 510 001745	강**숙	941223-*****	41,710	수령인 없음
208	114001 2023 01 1 530 015829	강**숙	941223-*****	18,540	수령인 없음
209	114001 2023 01 1 690 036966	강**현	600204-*****	27,810	수령인 없음
210	114001 2023 01 1 690 036967	강**현	600204-*****	27,810	수령인 없음
211	114001 2023 01 1 510 002992	안**옥	830331-*****	41,710	수령인 없음
212	114001 2023 01 1 510 002996	안**옥	830331-*****	41,710	수령인 없음
213	114001 2023 01 1 800 055471	주**회**에**치**이**로**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214	114001 2023 01 1 650 030134	주**회**대**한**프**비	284911-*****	27,810	수령인 없음
215	114001 2023 01 1 650 031095	주**회**대**한**프**비	284911-*****	27,810	수령인 없음
216	114001 2023 01 1 560 022078	이**자	470921-*****	27,810	수령인 없음
217	114001 2023 01 1 710 042951	이**희	851028-*****	27,810	수령인 없음
218	114001 2023 01 1 800 053576	김**규	571006-*****	27,810	수령인 없음
219	114001 2023 01 1 551 020314	김**강	770316-*****	27,810	수령인 없음
220	114001 2023 01 1 510 003399	소**영	590703-*****	41,710	수령인 없음
221	114001 2023 01 1 800 053246	유**옥	520730-*****	27,810	수령인 없음
222	114001 2023 01 1 690 036303	고**애	780113-*****	41,710	수령인 없음
223	114001 2023 01 1 690 035685	정**훈	941001-*****	41,710	수령인 없음
224	114001 2023 01 1 530 013831	양**현	941031-*****	41,710	수령인 없음
225	114001 2023 01 1 710 041923	유**우	811119-*****	41,710	수령인 없음
226	114001 2023 01 1 560 021161	황**선	690305-*****	41,71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227	114001 2023 01 1 690 035626	더**이**퍼**이** **식**사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228	114001 2023 01 1 510 000588	박**준	741202-*****	55,620	수령인 없음
229	114001 2023 01 1 510 002857	김**중	630728-*****	41,710	수령인 없음
230	114001 2023 01 1 510 006154	(주)동**메**칼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231	114001 2023 01 1 800 051980	한**욱	630204-*****	27,810	수령인 없음
232	114001 2023 01 1 710 045822	박**철	610220-*****	18,540	수령인 없음
233	114001 2023 01 1 710 046096	박**철	610220-*****	18,540	수령인 없음
234	114001 2023 01 1 710 041475	박**철	610220-*****	55,620	수령인 없음
235	114001 2023 01 1 690 036558	동**푸**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236	114001 2023 01 1 530 015298	방**영	840822-*****	27,810	수령인 없음
237	114001 2023 01 1 550 017392	최**식	630915-*****	41,710	수령인 없음
238	114001 2023 01 1 800 051970	드**파**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39	114001 2023 01 1 660 032508	임**화	611113-*****	41,710	수령인 없음
240	114001 2023 01 1 510 001561	민**기	750509-*****	41,710	수령인 없음
241	114001 2023 01 1 710 042188	안**민	770110-*****	41,710	수령인 없음
242	114001 2023 01 1 510 006056	김**원	651208-*****	27,810	수령인 없음
243	114001 2023 01 1 510 005959	김**원	651208-*****	27,810	수령인 없음
244	114001 2023 01 1 510 005964	김**원	651208-*****	27,810	수령인 없음
245	114001 2023 01 1 800 048637	김**란	700411-*****	41,710	수령인 없음
246	114001 2023 01 1 700 038978	박**름	861002-*****	41,710	수령인 없음
247	114001 2023 01 1 655 031753	최**혁	880106-*****	41,710	수령인 없음
248	114001 2023 01 1 690 035915	김**영	910919-*****	41,710	수령인 없음
249	114001 2023 01 1 510 002004	김**현	550104-*****	41,710	수령인 없음
250	114001 2023 01 1 583 027223	성**경	840808-*****	41,710	수령인 없음
251	114001 2023 01 1 560 022930	성**경	840808-*****	27,810	수령인 없음
252	114001 2023 01 1 660 034724	레**포**(주)	110111-*****	18,540	수령인 없음
253	114001 2023 01 1 660 034180	레**포**(주)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254	114001 2023 01 1 660 034179	레**포**(주)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255	114001 2023 01 1 510 001441	김**수	790519-*****	41,710	수령인 없음
256	114001 2023 01 1 710 046252	로**피**스*(주)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257	114001 2023 01 1 510 001402	이**호	920309-*****	41,710	수령인 없음
258	114001 2023 01 1 560 021470	최**라	910713-*****	41,710	수령인 없음
259	114001 2023 01 1 690 036114	최**창	660306-*****	41,710	수령인 없음
260	114001 2023 01 1 540 016364	정**연	940222-*****	41,710	수령인 없음
261	114001 2023 01 1 570 023877	박**성	710613-*****	41,710	수령인 없음
262	114001 2023 01 1 690 035920	이**범	921022-*****	41,710	수령인 없음
263	114001 2023 01 1 700 039439	김**훈	760301-*****	41,710	수령인 없음
264	114001 2023 01 1 650 029173	유**주	940119-*****	41,710	수령인 없음
265	114001 2023 01 1 700 040577	주**회** **리**건**사**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66	114001 2023 01 1 521 010876	하**숙	540808-*****	27,810	수령인 없음
267	114001 2023 01 1 583 027655	X*A*Y*J*N	680808-*****	27,810	수령인 없음
268	114001 2023 01 1 540 016883	최**화	690710-*****	18,540	수령인 없음
269	114001 2023 01 1 510 008502	박**미	651225-*****	18,540	수령인 없음
270	114001 2023 01 1 522 012955	변**녀	750110-*****	18,540	수령인 없음
271	114001 2023 01 1 520 009011	황**연	940428-*****	41,710	수령인 없음
272	114001 2023 01 1 570 023651	여**림	990203-*****	41,710	수령인 없음
273	114001 2023 01 1 510 001720	김**석	930813-*****	41,710	수령인 없음
274	114001 2023 01 1 510 002375	황**비	940407-*****	41,710	수령인 없음
275	114001 2023 01 1 700 040339	김**범	741219-*****	27,810	수령인 없음
276	114001 2023 01 1 710 044370	유**승	670721-*****	27,810	수령인 없음
277	114001 2023 01 1 660 033079	최**상	680504-*****	41,710	수령인 없음
278	114001 2023 01 1 530 013303	이**두	930403-*****	41,710	수령인 없음
279	114001 2023 01 1 551 019253	최**연	621120-*****	41,710	수령인 없음
280	114001 2023 01 1 690 035619	김**	981024-*****	41,710	수령인 없음
281	114001 2023 01 1 800 049694	(**)**국**전**경**리**회	120121-*****	41,710	수령인 없음
282	114001 2023 01 1 510 000070	민**산**개**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283	114001 2023 01 1 570 023751	정**술	960820-*****	41,710	수령인 없음
284	114001 2023 01 1 710 044298	바**오**스**식**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285	114001 2023 01 1 800 050243	바**오**스**식**사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86	114001 2023 01 1 700 039195	윤**준	941016-*****	41,710	수령인 없음
287	114001 2023 01 1 530 014412	J*N*I*N*Y*	870702-*****	41,710	수령인 없음
288	114001 2023 01 1 690 038111	(주)베**스**스**틱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289	114001 2023 01 1 521 010497	(주)베**타**글**벌	110111-*****	41,710	수령인 없음
290	114001 2023 01 1 660 032998	김**규	630620-*****	41,710	수령인 없음
291	114001 2023 01 1 510 000493	주**회**베**비**젤	131111-*****	69,520	수령인 없음
292	114001 2023 01 1 530 014728	조**욱	690204-*****	27,810	수령인 없음
293	114001 2023 01 1 800 048948	보**전**(주)	110111-*****	41,710	수령인 없음
294	114001 2023 01 1 690 037013	김**화	760908-*****	27,810	수령인 없음
295	114001 2023 01 1 800 048534	브**보**행*주**회**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296	114001 2023 01 1 710 041153	브**보**행*주**회**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297	114001 2023 01 1 690 036224	최**리	880227-*****	41,710	수령인 없음
298	114001 2023 01 1 530 014193	김**예	961224-*****	41,710	수령인 없음
299	114001 2023 01 1 800 051708	(주)비**엘**디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00	114001 2023 01 1 550 017101	권**린	750124-*****	69,520	수령인 없음
301	114001 2023 01 1 710 042115	최**수	710210-*****	41,710	수령인 없음
302	114001 2023 01 1 660 033293	오**석	660517-*****	41,710	수령인 없음
303	114001 2023 01 1 690 035373	유**정	781210-*****	41,710	수령인 없음
304	114001 2023 01 1 690 038044	사**소**트**자**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05	114001 2023 01 1 690 038040	사**소**트**자**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06	114001 2023 01 1 690 036108	사**소**트**자**주**회**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07	114001 2023 01 1 510 006710	고**준	500309-*****	27,810	수령인 없음
308	114001 2023 01 1 710 043628	김**흥	720110-*****	27,810	수령인 없음
309	114001 2023 01 1 710 044054	박**리	650305-*****	27,810	수령인 없음
310	114001 2023 01 1 690 038000	박**리	650305-*****	27,810	수령인 없음
311	114001 2023 01 1 800 046737	강**준	470929-*****	69,520	수령인 없음
312	114001 2023 01 1 800 053551	상**개**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13	114001 2023 01 1 710 044485	김**원	580125-*****	27,810	수령인 없음
314	114001 2023 01 1 510 001316	오**레	580815-*****	41,710	수령인 없음
315	114001 2023 01 1 800 052721	선**기**(주)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16	114001 2023 01 1 710 044629	박**태	580623-*****	27,810	수령인 없음
317	114001 2023 01 1 710 042182	박**태	580623-*****	41,710	수령인 없음
318	114001 2023 01 1 551 019134	김**리	930524-*****	55,620	수령인 없음
319	114001 2023 01 1 530 014082	세**법**춘**	124771-*****	41,710	수령인 없음
320	114001 2023 01 1 690 034949	세**글**비**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321	114001 2023 01 1 510 001588	세**코**아*주**회**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22	114001 2023 01 1 530 013472	백**열	921204-*****	41,710	수령인 없음
323	114001 2023 01 1 690 035754	윤**호	940726-*****	41,710	수령인 없음
324	114001 2023 01 1 510 002370	배**기	790626-*****	41,710	수령인 없음
325	114001 2023 01 1 800 048871	송**식**주**회**	154311-*****	41,710	수령인 없음
326	114001 2023 01 1 800 050912	수**플**트*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27	114001 2023 01 1 522 012727	이**홍	561017-*****	18,540	수령인 없음
328	114001 2023 01 1 522 012573	이**홍	561017-*****	27,810	수령인 없음
329	114001 2023 01 1 690 036583	정**관	631004-*****	41,710	수령인 없음
330	114001 2023 01 1 700 039627	김**범	741219-*****	41,710	수령인 없음
331	114001 2023 01 1 560 020886	장**영	940228-*****	41,710	수령인 없음
332	114001 2023 01 1 521 011676	이**선	600608-*****	27,810	수령인 없음
333	114001 2023 01 1 690 036567	김**윤	701217-*****	41,710	수령인 없음
334	114001 2023 01 1 690 038290	이**현	821116-*****	27,810	수령인 없음
335	114001 2023 01 1 690 035926	이**현	821116-*****	41,710	수령인 없음
336	114001 2023 01 1 530 013591	곽**열	630210-*****	41,710	수령인 없음
337	114001 2023 01 1 650 029186	고**창	890605-*****	41,710	수령인 없음
338	114001 2023 01 1 510 006222	이**영	700717-*****	27,810	수령인 없음
339	114001 2023 01 1 510 005963	이**영	700717-*****	27,810	수령인 없음
340	114001 2023 01 1 530 013279	주**회** **한**프**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41	114001 2023 01 1 800 047723	최**철	561004-*****	55,620	수령인 없음
342	114001 2023 01 1 550 017118	유**은	730618-*****	69,52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343	114001 2023 01 1 510 004650	조**현	860228-*****	27,810	수령인 없음
344	114001 2023 01 1 510 000046	김**용	791104-*****	69,520	수령인 없음
345	114001 2023 01 1 530 013692	신**리	950510-*****	41,710	수령인 없음
346	114001 2023 01 1 530 013924	배**영	970422-*****	41,710	수령인 없음
347	114001 2023 01 1 510 002981	엄**호	790704-*****	41,710	수령인 없음
348	114001 2023 01 1 510 005928	강**정	641125-*****	27,810	수령인 없음
349	114001 2023 01 1 510 008416	강**정	641125-*****	18,540	수령인 없음
350	114001 2023 01 1 510 008417	강**정	641125-*****	18,540	수령인 없음
351	114001 2023 01 1 510 001506	T*O* *V*E*I*	831229-*****	41,710	수령인 없음
352	114001 2023 01 1 710 041685	백**현	841118-*****	41,710	수령인 없음
353	114001 2023 01 1 510 004487	아**벤**리**(주)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54	114001 2023 01 1 510 000970	서**원	921211-*****	41,710	수령인 없음
355	114001 2023 01 1 690 037272	박**길	650128-*****	27,810	수령인 없음
356	114001 2023 01 1 510 004597	김**성	970318-*****	27,810	수령인 없음
357	114001 2023 01 1 800 056362	주**회**에**치**이**로**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358	114001 2023 01 1 530 013557	김**니	770326-*****	41,710	수령인 없음
359	114001 2023 01 1 510 002559	안**용	941023-*****	41,710	수령인 없음
360	114001 2023 01 1 530 014264	최**임	561114-*****	41,710	수령인 없음
361	114001 2023 01 1 530 015359	김**수	700614-*****	27,810	수령인 없음
362	114001 2023 01 1 660 033403	장**성	911129-*****	41,710	수령인 없음
363	114001 2023 01 1 800 049615	황**선	801024-*****	41,710	수령인 없음
364	114001 2023 01 1 800 056345	(주)에**에**코**아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365	114001 2023 01 1 690 037812	김**미	691115-*****	27,810	수령인 없음
366	114001 2023 01 1 800 053226	에**엠**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67	114001 2023 01 1 560 021425	김**수	881129-*****	41,710	수령인 없음
368	114001 2023 01 1 510 002128	이**준	851019-*****	41,710	수령인 없음
369	114001 2023 01 1 700 039239	전**린	831030-*****	41,710	수령인 없음
370	114001 2023 01 1 690 036599	전**린	831030-*****	41,710	수령인 없음
371	114001 2023 01 1 710 045879	주**회**에**치**이**처**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372	114001 2023 01 1 710 045882	주**회**에**치**이**처**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373	114001 2023 01 1 690 038086	백**남	810213-*****	27,810	수령인 없음
374	114001 2023 01 1 690 036250	이**성	881011-*****	41,710	수령인 없음
375	114001 2023 01 1 530 014454	강**자	660501-*****	27,810	수령인 없음
376	114001 2023 01 1 710 044819	주**회**신**그**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77	114001 2023 01 1 660 032975	(주)엘**피**드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78	114001 2023 01 1 800 051904	엘**코**아(주)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79	114001 2023 01 1 800 051834	진**기	640501-*****	27,810	수령인 없음
380	114001 2023 01 1 690 037828	장**근	970612-*****	27,810	수령인 없음
381	114001 2023 01 1 510 006484	김**환	870126-*****	27,810	수령인 없음
382	114001 2023 01 1 582 026379	육**애	730405-*****	27,810	수령인 없음
383	114001 2023 01 1 521 010258	김**훈	920213-*****	41,710	수령인 없음
384	114001 2023 01 1 650 029665	박**민	860404-*****	41,710	수령인 없음
385	114001 2023 01 1 570 023842	김**우	881031-*****	41,710	수령인 없음
386	114001 2023 01 1 551 019208	남**용	810711-*****	41,710	수령인 없음
387	114001 2023 01 1 530 013318	L*N*Y*N*Z*E	930402-*****	41,710	수령인 없음
388	114001 2023 01 1 510 002190	이**경	850328-*****	41,710	수령인 없음
389	114001 2023 01 1 800 051278	김**준	780807-*****	27,810	수령인 없음
390	114001 2023 01 1 800 051824	(주)와**티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91	114001 2023 01 1 530 013876	조**철	720527-*****	41,710	수령인 없음
392	114001 2023 01 1 510 002741	강**성	750409-*****	41,710	수령인 없음
393	114001 2023 01 1 800 051742	웰**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394	114001 2023 01 1 510 001548	오**석	790312-*****	41,710	수령인 없음
395	114001 2023 01 1 800 048027	주**회**비**피**루**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396	114001 2023 01 1 520 008886	유**형	930107-*****	41,710	수령인 없음
397	114001 2023 01 1 510 002276	정**윤	660610-*****	41,710	수령인 없음
398	114001 2023 01 1 710 042514	(주)엔**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399	114001 2023 01 1 710 041637	박**수	750223-*****	41,710	수령인 없음
400	114001 2023 01 1 650 028837	의**건**주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401	114001 2023 01 1 650 028838	의**건**(주)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402	114001 2023 01 1 690 035855	곽**성	590301-*****	41,710	수령인 없음
403	114001 2023 01 1 530 014212	방**영	840822-*****	41,710	수령인 없음
404	114001 2023 01 1 690 035846	임**희	780802-*****	41,710	수령인 없음
405	114001 2023 01 1 690 035620	유**만	640927-*****	41,710	수령인 없음
406	114001 2023 01 1 530 013953	한**정	830320-*****	41,710	수령인 없음
407	114001 2023 01 1 551 020338	이**득	630305-*****	27,810	수령인 없음
408	114001 2023 01 1 551 020537	유**주	690216-*****	27,810	수령인 없음
409	114001 2023 01 1 660 032672	윤**진	910813-*****	41,710	수령인 없음
410	114001 2023 01 1 530 014237	정**라	930609-*****	41,710	수령인 없음
411	114001 2023 01 1 510 001050	김**경	830428-*****	41,710	수령인 없음
412	114001 2023 01 1 510 003083	김**자	600702-*****	41,710	수령인 없음
413	114001 2023 01 1 551 020080	장**호	700727-*****	27,810	수령인 없음
414	114001 2023 01 1 510 000584	이**승	690405-*****	55,620	수령인 없음
415	114001 2023 01 1 710 046003	반**상	600227-*****	18,540	수령인 없음
416	114001 2023 01 1 710 046270	반**상	600227-*****	18,540	수령인 없음
417	114001 2023 01 1 800 054347	반**상	600227-*****	27,810	수령인 없음
418	114001 2023 01 1 710 041609	반**상	600227-*****	41,710	수령인 없음
419	114001 2023 01 1 710 045032	반**상	600227-*****	27,810	수령인 없음
420	114001 2023 01 1 510 007637	주**회**호**건**	124611-*****	27,810	수령인 없음
421	114001 2023 01 1 800 054475	김**목	600809-*****	27,810	수령인 없음
422	114001 2023 01 1 530 014593	장**준	700305-*****	27,810	수령인 없음
423	114001 2023 01 1 522 012315	김**남	630804-*****	27,810	수령인 없음
424	114001 2023 01 1 510 007192	이**일	750206-*****	27,810	수령인 없음
425	114001 2023 01 1 551 019559	주**회** **년**가**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426	114001 2023 01 1 510 005245	(주)뉴**티**씨	134511-*****	27,810	수령인 없음
427	114001 2023 01 1 510 002330	김**영	880315-*****	41,710	수령인 없음
428	114001 2023 01 1 800 056281	정**희	801109-*****	18,540	수령인 없음
429	114001 2023 01 1 510 001480	이**우	830419-*****	41,710	수령인 없음
430	114001 2023 01 1 530 014755	정**건**주**회**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431	114001 2023 01 1 660 032780	조**석	880514-*****	41,710	수령인 없음
432	114001 2023 01 1 710 041397	서**석	540113-*****	69,520	수령인 없음
433	114001 2023 01 1 800 056397	최**섭	610110-*****	18,540	수령인 없음
434	114001 2023 01 1 710 045504	최**섭	610110-*****	18,540	수령인 없음
435	114001 2023 01 1 580 024931	박**혜	860713-*****	41,710	수령인 없음
436	114001 2023 01 1 690 036112	이**우	810615-*****	41,710	수령인 없음
437	114001 2023 01 1 510 002005	변**섭	780312-*****	41,710	수령인 없음
438	114001 2023 01 1 530 013691	박**현	700122-*****	41,710	수령인 없음
439	114001 2023 01 1 800 048630	주**회**고**	134111-*****	41,710	수령인 없음
440	114001 2023 01 1 710 041746	주**회** **연**지**어**	110111-*****	41,710	수령인 없음
441	114001 2023 01 1 650 029431	주**회**대**한**프**비	284911-*****	41,710	수령인 없음
442	114001 2023 01 1 710 041796	(주)대**포**산**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43	114001 2023 01 1 660 033110	주**회** **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44	114001 2023 01 1 710 041940	주**회**디**콜**보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45	114001 2023 01 1 700 039374	주**회** **츠**앤**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46	114001 2023 01 1 510 006501	주**회**메**파**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47	114001 2023 01 1 710 041815	주**회**문**상**	110111-*****	41,710	수령인 없음
448	114001 2023 01 1 710 044925	주**회**문**상**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449	114001 2023 01 1 510 001449	(주)민**모**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50	114001 2023 01 1 710 041798	주**회**바**링**	110111-*****	41,710	수령인 없음
451	114001 2023 01 1 510 000772	주**회** **타**라**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52	114001 2023 01 1 710 041984	(주)벨**체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53	114001 2023 01 1 655 031767	주**회**뽀**패**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54	114001 2023 01 1 510 002098	주**회**애**다**렉**카	121111-*****	41,710	수령인 없음
455	114001 2023 01 1 690 035638	주**회**에**에**피**아**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56	114001 2023 01 1 582 026241	주**회**진**린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57	114001 2023 01 1 551 020172	주**회** **오**에**케**션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58	114001 2023 01 1 710 041938	주**회**파**스**레**글**벌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459	114001 2023 01 1 800 047209	(주)퍼**트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460	114001 2023 01 1 800 050217	(주)대**포**산**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61	114001 2023 01 1 710 041848	주**회**라**필**	134811-*****	41,710	수령인 없음
462	114001 2023 01 1 690 037826	(주)코**아**게**비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63	114001 2023 01 1 510 002963	주**회** **텐**랩**이**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64	114001 2023 01 1 800 051327	주**회**파**스**레**글**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65	114001 2023 01 1 510 003088	주**회**에**캠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66	114001 2023 01 1 510 003101	주**회**에**캠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67	114001 2023 01 1 530 013452	주**회**와**앤**이**설**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68	114001 2023 01 1 530 015721	차**영	931013-*****	27,810	수령인 없음
469	114001 2023 01 1 690 035084	유**성	851128-*****	69,520	수령인 없음
470	114001 2023 01 1 530 015656	이**수	910824-*****	27,810	수령인 없음
471	114001 2023 01 1 530 015704	한**옥	350320-*****	27,810	수령인 없음
472	114001 2023 01 1 510 000541	주**회**천**	120111-*****	69,520	수령인 없음
473	114001 2023 01 1 551 019123	김**환	801228-*****	69,520	수령인 없음
474	114001 2023 01 1 582 027193	이**희	740310-*****	27,810	수령인 없음
475	114001 2023 01 1 800 049579	(주)한**산**보**연**원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476	114001 2023 01 1 583 027662	김**화	850531-*****	27,810	수령인 없음
477	114001 2023 01 1 583 027418	진**연	750914-*****	41,710	수령인 없음
478	114001 2023 01 1 530 014579	주**회** **오**드**스**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479	114001 2023 01 1 710 044685	지**전***(주)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480	114001 2023 01 1 800 055564	이**선	670515-*****	18,540	수령인 없음
481	114001 2023 01 1 800 056687	이**선	670515-*****	18,540	수령인 없음
482	114001 2023 01 1 800 054749	이**선	670515-*****	18,540	수령인 없음
483	114001 2023 01 1 800 049390	이**선	670515-*****	41,710	수령인 없음
484	114001 2023 01 1 800 056162	서**용	680624-*****	18,540	수령인 없음
485	114001 2023 01 1 800 048050	서**용	680624-*****	55,620	수령인 없음
486	114001 2023 01 1 800 053051	서**용	680624-*****	27,810	수령인 없음
487	114001 2023 01 1 800 051197	권**일	741005-*****	27,810	수령인 없음
488	114001 2023 01 1 800 054459	케**에**앤**(주)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489	114001 2023 01 1 510 004507	오**종	731020-*****	27,810	수령인 없음
490	114001 2023 01 1 655 031866	황**환	741014-*****	27,810	수령인 없음
491	114001 2023 01 1 521 010608	허**덕	780120-*****	27,810	수령인 없음
492	114001 2023 01 1 582 026710	주**회**우**건**산**	200111-*****	27,810	수령인 없음
493	114001 2023 01 1 710 044619	김**수	601222-*****	27,810	수령인 없음
494	114001 2023 01 1 510 001678	이**미	660317-*****	41,710	수령인 없음
495	114001 2023 01 1 530 014689	배**명	680129-*****	27,810	수령인 없음
496	114001 2023 01 1 700 039613	이**자	730508-*****	41,710	수령인 없음
497	114001 2023 01 1 690 036704	주**회** **나**품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498	114001 2023 01 1 710 042468	변**희	611128-*****	41,710	수령인 없음
499	114001 2023 01 1 660 032786	조**행	681129-*****	41,710	수령인 없음
500	114001 2023 01 1 560 021553	조**영	880326-*****	41,710	수령인 없음
501	114001 2023 01 1 560 021099	조**영	880326-*****	41,710	수령인 없음
502	114001 2023 01 1 800 047312	케**에**앤**(주)	110111-*****	55,620	수령인 없음
503	114001 2023 01 1 510 002436	김**관	450317-*****	41,710	수령인 없음
504	114001 2023 01 1 510 006513	송**자	670510-*****	27,810	수령인 없음
505	114001 2023 01 1 510 000176	리**주**회**	120111-*****	55,620	수령인 없음
506	114001 2023 01 1 700 040346	채**석	780702-*****	27,810	수령인 없음
507	114001 2023 01 1 530 015840	이**재	810425-*****	18,540	수령인 없음
508	114001 2023 01 1 510 002378	이**직	750317-*****	41,710	수령인 없음
509	114001 2023 01 1 800 048482	양**준	740220-*****	41,710	수령인 없음
510	114001 2023 01 1 510 002198	임**은	880411-*****	41,710	수령인 없음
511	114001 2023 01 1 800 054225	(주)클**어**	110111-*****	27,810	수령인 없음
512	114001 2023 01 1 690 035372	홍**걸	760621-*****	41,710	수령인 없음
513	114001 2023 01 1 660 033130	송**영	770820-*****	41,710	수령인 없음
514	114001 2023 01 1 800 056241	김**권	710821-*****	18,540	수령인 없음
515	114001 2023 01 1 800 052079	김**래	841214-*****	27,810	수령인 없음
516	114001 2023 01 1 690 037153	강**현	600204-*****	27,810	수령인 없음

연번	납세번호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517	114001 2023 01 1 800 055225	이**서	581015-*****	18,540	수령인 없음
518	114001 2023 01 1 800 055791	이**서	581015-*****	18,540	수령인 없음
519	114001 2023 01 1 800 052332	이**서	581015-*****	27,810	수령인 없음
520	114001 2023 01 1 800 049386	이**서	581015-*****	41,710	수령인 없음
521	114001 2023 01 1 522 011935	김**식	740527-*****	41,710	수령인 없음
522	114001 2023 01 1 510 001790	주**회**허**애**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523	114001 2023 01 1 580 025047	(주)웨**피**	120111-*****	41,710	수령인 없음
524	114001 2023 01 1 510 007396	투**즈**주**회**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25	114001 2023 01 1 530 013361	최**연	940425-*****	41,710	수령인 없음
526	114001 2023 01 1 800 047320	(주)티**이**크**터**서**	110111-*****	55,620	수령인 없음
527	114001 2023 01 1 800 051102	전**력	770313-*****	27,810	수령인 없음
528	114001 2023 01 1 710 041458	(주)그**메**	134111-*****	55,620	수령인 없음
529	114001 2023 01 1 800 054650	주**회**에**치**이**로**	120111-*****	18,540	수령인 없음
530	114001 2023 01 1 540 016041	박**은	880111-*****	41,710	수령인 없음
531	114001 2023 01 1 800 051481	김**진	611120-*****	27,810	수령인 없음
532	114001 2023 01 1 530 013816	김**은	911015-*****	41,710	수령인 없음
533	114001 2023 01 1 660 032693	이**레	590923-*****	41,710	수령인 없음
534	114001 2023 01 1 690 035568	진**래	861115-*****	41,710	수령인 없음
535	114001 2023 01 1 510 008081	임**영	831128-*****	18,540	수령인 없음
536	114001 2023 01 1 650 029297	이**열	780314-*****	41,710	수령인 없음
537	114001 2023 01 1 660 033472	박**용	731127-*****	27,810	수령인 없음
538	114001 2023 01 1 690 036664	김**희	690402-*****	41,710	수령인 없음
539	114001 2023 01 1 530 015395	한**해**재**환**구**단**인**부	131827-*****	27,810	수령인 없음
540	114001 2023 01 1 510 002453	류**영	780228-*****	41,710	수령인 없음
541	114001 2023 01 1 510 006679	(주)마**준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42	114001 2023 01 1 710 044531	김**준	690713-*****	27,810	수령인 없음
543	114001 2023 01 1 530 013707	이**현	810803-*****	41,710	수령인 없음
544	114001 2023 01 1 510 002192	주**강	890127-*****	41,710	수령인 없음
545	114001 2023 01 1 530 014190	성**민	750301-*****	41,710	수령인 없음
546	114001 2023 01 1 530 014255	한**영	891110-*****	41,710	수령인 없음
547	114001 2023 01 1 530 014320	C*I*N* *U*L*N	500721-*****	41,710	수령인 없음
548	114001 2023 01 1 560 021460	추**아	780103-*****	41,710	수령인 없음
549	114001 2023 01 1 550 017154	이**수	760218-*****	69,520	수령인 없음
550	114001 2023 01 1 550 018202	방**상	500401-*****	27,810	수령인 없음
551	114001 2023 01 1 582 026761	노**원	790607-*****	27,810	수령인 없음
552	114001 2023 01 1 660 033978	주**회**계**스**이	120111-*****	27,810	수령인 없음
553	114001 2023 01 1 530 013715	오**주	811112-*****	41,710	수령인 없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32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김** 외 4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491112-*****	김**	28200	101501-2023-01-2 -510-001239	취득세	수시분	2023-01-10	수령인 없음	932,360
2	880119-*****	조**흥	28200	101501-2022-11-2 -650-051344	취득세	독촉분	2022-11-09	수령인 없음	1,222,710
3	880722-*****	임**연	28200	101501-2022-11-2 -700-054064	취득세	독촉분	2022-11-09	수령인 없음	1,692,720
4	680506-*****	심**태	28200	101501-2022-11-2 -540-055030	취득세	독촉분	2022-11-09	수령인 없음	16,198,85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34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 주**회**도**출**인**문**나**스 외 1건
- 서류의 송달지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등록면허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등록면허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3.1.31.을 2023.2.28.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등록면허세 수시분,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151111-*****	주**회**도**출**인**문**나**스	28200	114002-2022-10-2-550-070914	등록면허세(등록)	독촉분	2023-01-09	수취인,주소,거소, 영업소 불명	3,211,940
2	120114-*****	동**의**	28200	114002-2023-01-2-700-000001	등록면허세(등록)	수시분	2023-01-09	수령인 없음	328,91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42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2. ~ 2023. 2. 17.
3. 공고대상 : 322소3233 외 24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3. 2. 2.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2023년 1월분)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322소3233	A6 4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3.01.31	소유자 요청
2	390나2073	A8L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2023.01.31	소유자 요청
3	145호9655	Tiguan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2023.01.31	소유자 요청
4	18호2527	K7	삼성카드 주식회사	2023.01.30	소유자 요청
5	65부9935	그랜저(GRANDEUR)	김*연	2023.01.27	소유자 요청
6	24하6666	G90	신한카드(주)	2023.01.27	소유자 요청
7	145호9738	A6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2023.01.27	소유자 요청
8	31하8208	스팅어	신한카드(주)	2023.01.25	소유자 요청
9	243다8954	렉서스 ES300h	토요타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3.01.20	소유자 요청
10	243다8955	렉서스 ES300h	토요타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3.01.20	소유자 요청
11	72하4815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삼성카드주식회사	2023.01.19	소유자 요청
12	53하2240	K7	삼성카드주식회사	2023.01.19	소유자 요청
13	인천 70라8940	무쏘	오*길	2023.01.18	소유자 요청
14	160하4551	A5 Cabriolet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2023.01.18	소유자 요청
15	63소9326	투싼(TUCSON)	지*하	2023.01.12	소유자 요청
16	150하8252	K5	신한카드(주)	2023.01.12	소유자 요청
17	53호7112	K7	신한카드(주)	2023.01.12	소유자 요청
18	160하3766	K8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3.01.11	소유자 요청
19	84서6891	포터 II (PORTER II)	오*주	2023.01.10	소유자 요청
20	85버9364	포터 II (PORTER II)	강*일	2023.01.09	소유자 요청
21	36소5999	MINI Cooper D	성*영	2023.01.09	소유자 요청
22	47어3509	그랜저(GRANDEUR)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2023.01.05	소유자 요청
23	90소2548	봉고Ⅲ 냉동차	이*근	2023.01.05	소유자 요청
24	18하9414	싼타페(SANTAFE)	신한카드주식회사	2023.01.04	소유자 요청
25	145호7730	모하비	삼성카드주식회사	2023.01.03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7-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당초: L=165.7m, B=6.0m A=1,030m²
- 변경: L=165.7m, B=6.0m~6.6m, A=1,056m²

※ 기존 도로 확폭에 의한 면적 변경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 도로과(032-453-5643, 남동구 소래로 633)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4,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용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1	기정	장수동	397-10	도	1,030	1,030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변경	장수동	397-10	도	1,030	1,030		인천광역시 남동구				
2	변경	장수동	397-11	전	37	13		인천광역시				도로 확폭에 의한 신규편입
3	변경	장수동	405-7	도	36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 확폭에 의한 신규편입
4	변경	장수동	398-9	전	22	1		인천광역시				도로 확폭에 의한 신규편입
합 계				기정	1,030	1,030						
				변경	1,125	1,056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남동구 고시 제2022-74(2022.07.28.)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3.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당초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능골로 소로2-362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 변경 ※ 노선별 사업시행부서 변경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능골로 소로2-362호선 도로개설공사(도시재생과)
- 능골로 소로2-2호선 도로개설공사(도로과)

3. 사업규모(변경)

- 당초: 소로2-362호선: L=320m, B=8m, A=3,168m²
- 변경: 소로2-362호선: L=258m, B=8m, A=3,182m²
 ※ 소로2-362호선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증가
- 소로2-2호선: L=55m, B=8m, A=697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당초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변경: 수산동 소로2-362호선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변경: 수산동 소로2-2호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72, 2954,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별첨] 용지조서: 소로2-362호선(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501	전	959	104	송*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분할측량으로 인한 지번 및 면적변경
1-1	수산동	501-3	전	106	106	송*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	수산동	502	전	1,279	426	천*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 ***	"
2-1	수산동	502-2	전	429	429	천*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 ***	
3	수산동	597-110	도로	959	536	국	건설부	"
3-1	수산동	597-114	도로	536	536	국	건설부	
4	수산동	499-3	전	1,920	134	최*창	서울 강남구 광평로 10길 ***	"
4-1	수산동	499-5	전	134	134	최*창	서울 강남구 광평로 10길 ***	
5	수산동	506	전	1,137	238	최*식	인천 남구 인하로 430번길 ***	"
5-1	수산동	506-1	전	240	240	최*식	인천 남구 인하로 430번길 ***	
6	수산동	507	전	1,256	45	신*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6-1	수산동	507-1	전	45	45	신*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	
7	수산동	499-1	전	1,921	470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
7-1	수산동	499-4	전	470	470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8	수산동	498	전	583	77	송*노	인천 남동구 능골로 ***	" 소유자변경
8-1	수산동	498-4	전	78	78	송*훈	인천 남동구 구월로 ***	
9	수산동	354-5	전	992	31	정*량	남구 주안동 ***	"
9-1	수산동	354-17	전	31	31	정*량	남구 주안동 ***	
10	수산동	354-4	전	1,818	40	김*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
10-1	수산동	354-16	전	40	40	김*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11	수산동	600	도로	1,368	210	국	건설부	"
11-1	수산동	600-27	도로	281	281	국	건설부	
12	수산동	598-5	구거	2,553	654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1	수산동	598-7	구거	588	5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수산동	354-9	답	1,897	155	천*분	서울 동작구 사당로 ***	"
13-1	수산동	354-19	답	154	154	천*분	서울 동작구 사당로 ***	
14	수산동	492-2	전	1,076	48	최*미외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
14-1	수산동	492-3	전	48	48	최*미외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15	수산동	354-18	잡종지	1	1	이*승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조서누락 신규편입
16	수산동	597-47	도로	1,830.6	1	국	건설부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토지
합 계			당초		3,168			
			변경		3,182			

한전주 조서:소로2-36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STA)	방향	번호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85	우	도림지 57,213	한전
2	수산동	501	소로2-362	0+008.21	좌	도림지 57,L13,A1	한전
3	수산동	502	소로2-362	0+035.40	좌	도림지 57,L13,H1	한전
4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6.74	우	도림지 57,L12	한전
5	수산동	499-3	소로2-362	0+100.00	좌	도림지 57,L11	한전
6	수산동	499-1	소로2-362	0+116.70	우	도림지 57,L10	한전
7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175.89	우	도림지 57,L9	한전
8	수산동	354-5	소로2-362	0+187.00	좌	도림지 57,L9,A1	한전
9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2.00	좌	도림지 57,L8	한전
10	수산동	600	소로2-362	0+264.90	좌	도림지 57,L7	한전

지장물 조서:소로2-36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산출근거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0 x 17.0	1	84㎡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2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7 x 10.5	1	60㎡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3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6.0 x 6.3	1	38㎡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통신주 조서:소로2-36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STA)	방향	내용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65	우	-	KT
2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5.39	우	-	KT
3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0.80	좌	-	KT

용지조서: 소로2-2호선(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600	도	1,368	43			
1	수산동	600	도	1,087	43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감소
2	수산동	598-5	구	2,553	32			
2	수산동	598-5	구	1,303	32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감소
3	수산동	354-9	답	1,897	170			
2	수산동	354-9	답	1,743	170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감소
4	수산동	354-7	잡	400	232	이*승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62번길 ***	
5	수산동	354-15	답	73	73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6	수산동	354-10	전	1,248	41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7	수산동	356	답	99	5	**종친회	487	
8	수산동	357	답	142	89	**종친회	487	
9	수산동	354-1	대	330	5	김*창외1	인천 남구 학익동 ***	
10	수산동	345-9	도	2,220	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합 계			당초	10,330	697			
			변경	8,645	697			

※노선별 용지조서분리, 편입면적변경 없음

한전주 조서:소로2-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STA)	방향	번호	비고
1	수산동	354-7	소로2-2	0+033.00	우	도림지 57,L7,R1	한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5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2. 2.
3. 처분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2. 2. ~ 2023. 2. 1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 반 음식점	1995- 0199166	성우식당	이**	남동구 인하로 513-1 (구월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12-26	2023-02-02
휴 게 음식점	2012- 0199521	모래놀이 샌드노리	이**	남동구 석산로 159, 5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9-15	2023-02-0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05- 0199615	포도나무떡집	황**	남동구 간석로66번길 28, 101호(간석동, 우성꾸메마을)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8-25	2023-02-02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3. 2. 2.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3-255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일부 모호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안 제8조)
-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시기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
-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전화 032-453-2504, FAX 032-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일부 모호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 (안 제8조)
-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시기 구체적으로 명시 : (안 제10조)
-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 (안 제2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건강생활지원수당”으로 한다.

제9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당”을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를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남동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하며 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 ----- ----- -----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 ----- ----- 건강 생활지원수당-----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9조(수당의 신청) -----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 ----- -----

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생 략)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 추석 명절이 속하는 달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⑤ (생 략)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급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

-----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7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56호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3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2. 3.

남 동 구 청 장

1. 사업목적

- 실무경험의 노하우를 보유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재이동을 유도하고 지원하고자 함.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란?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신중년 소득창출 기회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 채용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가. 1차 : 서류 전형 :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단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나. 2차 : 면접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다. 합격자 결정 기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라. 불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심사 결과 평정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하인 경우

2. 모집개요

- ☐ 사 업 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 접수기간 : 2023. 2. 8.(수) ~ 2. 17.(금) (10일간)
- ☐ 세부사업별 모집인원 및 분야 : 총 3명 (남녀 구분 없음)
 - 신중년 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3명)
 -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전문인력
-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gou0111@korea.kr)
 - ※ 2월 8일 00시00분에서 2월 17일 23시 59분까지 도착된 전자우편 한해 인정 (증빙서류 포함)
- ☐ 문 의 처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팀 (☎ 032-453-5983)

3. 선발방법

-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통과자 중 2차 면접심사 실시
 - * 1차 서류 심사 시 최종 선발인원(3명)의 2배수 선발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 21.(화) 한 ※ 합격자 한해 개별통보	2023. 2. 23.(목) 오후 2시 (예정)	2023. 2. 27.(월) 예정 ※ 공고 및 개별통보

4. 신청자격

-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공고일 기준 해당 연령대 출생자) 인천시민으로서 다음 공통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참여요건 중 하나를 갖춰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공 통	▶ 인천광역시 거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퇴직한 전문인력 * 참여자 모집공고일 기준 / 남녀 구분 없음 ▶ 지원사업 관련분야 근무 유경험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 컴퓨터 관련 및 문서작성 등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남동구 거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 자차 운전 출장 가능자

☐ 사업 참여 배제자

- 현재 취업상태인자 (기업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 공공기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최근 3년간 2년 이상**으로 가장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미경과자**
- 공공기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최근 3년간 2년 이상**으로 가장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자** 중 1년 이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참여자**

5.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3월 ~ 12월

☐ 급여지급 : 시급제 (시급*근무시간)

- 시 급 : 11,030원 (2023년 남동구 생활임금 적용)
- 만근 시 주휴 및 월차수당 지급 / 출장여비(1개월당 10만원 이내)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 / 주 5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4대 보험 의무가입
- (※ 도서관 휴관일에 맞춰 휴무요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임금지급 : 익월 5일 이내 지급

☐ 근로(활동) 내용

구 분	근로(활동) 내용	비 고 (근무기간)
공 통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홍보 협조 ▶ 사업별 실적 제출 및 보고, 지도·감독 등 수행 ▶ 기타 사업전반 행정사무관리	2022.3.1. ~ 2022.12.31.
신중년 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 공통사항 - 청사 보안점검 및 이용자 안내, 자료실 청소 및 정리 등 ▶ 도서관 운영지원 - 자료실 운영 보조(대출·반납, 도서 및 서가 정리 등)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제출서류

☐ 필수 사항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 전문경력 기술서 1부. **[서식3]**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4]**
-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별도서식 없음】**

☐ 선택 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별도서식 없음】**

7. 기타사항

- ☐ 신청서류 필수 제출사항 누락 및 허위 신청사항 발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 ☐ 최종 합격 및 사업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임금 지급 불가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8. 문의사항

- ☐ 문의처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팀 (☎ 032-453-5983)

서식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분야	☒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전문인력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학력	☐ 대학원(박사) 졸 ☐ 대학원(석사) 졸 ☐ 대학교 졸 ☐ 전문대 졸 ☐ 기타		
	전공 ()		
1.경력 및 자격			
1.1 경력(가장 마지막 경력과 주요경력만 기재)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1.2 자격			
자격증명(등급포함)	취득일	취득기관	유형
			*1. 국가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3. 공인민간자격 4. 등록민간자격
2. 교육훈련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시간)	교육이수기관	
	(시간)		
	(시간)		
	(시간)		

서식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경력 및 자격	채용절차 진행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학력, 교육훈련 이수 내역	채용절차 진행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채용절차 진행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 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 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 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 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 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 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 련 각종 연구, 설문조사 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계좌번호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 기관의 법률 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 률에 따름)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전문경력 기술서

성 명	연 락 처
전문경력 내용	-
유사경력 내용	-
자기소개/ 사업참여 희망 사유/ 활동계획 등	-
2023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남동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업 참여자 자격확인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 거주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57호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의거 청문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2. 3.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3. 2. 3. ~ 2023. 2. 17.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유흥주점	2011-0199520	야성룸클럽	심**	석촌로46번길 21, 2층 202호(간석동)	-

4.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
5. 사 유 :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1)
- 청문일시 : 2023. 2. 27.(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제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 식품허가팀 032-453-2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11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모범운전자회 지원 사업 (안 제3조)
- 사업의 감독 및 평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32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모범운전자회 지원 사업 (안 제3조)
- 사업의 감독 및 평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 제5조의2, 제5조의3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노인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지원사업)” 관련으로 비용 발생
 -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 현재 남동구모범운전자회사업지원 예산(1천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2. 3. 21.]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12호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등 (안 제5조)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 제6조)
-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안 제7조)
- 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안 제8조)
- 주차공유 운영현황의 공개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33
----------	------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등 (안 제5조)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 제6조)
-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안 제7조)
- 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안 제8조)
- 주차공유 운영현황의 공개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19조, 제21조
-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9조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제25조의3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사업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4.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5.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6.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공간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관련으로 비용 발생
 -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 2023년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예산(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생략)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군·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군·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시 및 군·구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25조의3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 교육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의무개방기간, 개방시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25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3호를 따른다.

③ 그 밖에 개방주차면수, 시설물 관리 등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13호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동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1조 ~ 제2조)
- 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안 제3조)
-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 (안 제4조 ~ 제5조)
- 위탁의료기관 선정 (안 제6조)
- 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안 제8조)
- 예방접종 피해 보상 안내 (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34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철상·오용환

전 용 호 · 전 유 형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 제안이유

- 남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1조 ~ 제2조)
- 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안 제3조)
-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 (안 제4조 ~ 제5조)
- 위탁의료기관 선정 (안 제6조)
- 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안 제8조)
- 예방접종 피해 보상 안내 (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2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31.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단,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제4조(비용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 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시행일로부터 2023년까지는 75세 이상, 2024년까지는 70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계약목적	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위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사용시 업체명 : _____ [] 미사용	
위탁계약조건	별지 뒷면 참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④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대상포진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0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001호)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계획」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남동구 65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방접종률 40% 적용하여 대상자 수 산출하였음.
- ☞ 연령별 순차적 지원 계획하여, 1차년도 75세 이상, 2차년도 70~74세, 3차년도 65~69세, 4차년도 이후 65세 진입 인구수로 추계.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비 19,610원, 백신비 95,000원으로 예방접종 1건당 114,610원으로 비용추계 하였음.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은 1회 접종 완료 후 재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과거 접종 완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1회 지원으로 접종 종료

나. 추계 결과

- 75세부터 접종 시 사업규모 (접종률 40% 적용)

사업연도	사업규모	인구수(명)	대상자 수(명)	소요예산(천원)
1차년도	2023년 (75세 이상)	30,493	12,197	1,400,899
2차년도	2024년 (70 ~ 74세)	23,984	9,594	1,099,568
3차년도	2025년 (65 ~ 69세)	41,363	16,545	1,896,222
4차년도	2026년 (65세)	9,145	3,658	419,243
5차년도	2027년 이후 (65세)	9,134	3,654	418,785
총 계		114,119	45,648	5,234,717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인천시 타 구(미추홀구, 동구 등)에서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남동구민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 증가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	-	-	-	-	-
세 출			1,400,899	1,099,568	1,896,222	419,243	418,785	5,234,717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400,899	1,099,568	1,896,222	419,243	418,785	5,234,717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군 구 비			1,400,899	1,099,568	1,896,222	419,243	418,785	5,234,717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25조(임시예방접종)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14호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치매환자가 구강관리 및 치아치료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을 지정 및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변경 :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에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를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7호)
-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위탁’을
→ ‘재계약’으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 ~ 2.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덕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35
----------	------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8명

☐ 제안이유

- 치매환자가 구강관리 및 치아치료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을 지정 및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에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를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7호)
-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위탁’을
→ ‘재계약’으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7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명칭은“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명칭은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구’라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시설종사자교육”을 “시설종사자교육,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달할”을 “알릴”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운영능력”을 “운영 능력”으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u>남동구 치매안심센터</u>”(이하‘<u>센터</u>’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u>남동구(이하‘구’라 한다)</u>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의뢰, 지원체계구축, <u>시설종사자 교육</u> 등) 8. (생략)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u>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u>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u>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u>남동구 치매안심센터</u>”(이하 “<u>센터</u>”라 한다)-----. ② ----- ----- -----(<u>이하 “구”라 한다</u>)----- ----- -----. 제3조(업무)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시설종사자교육,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u> ----- 8.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우에는 치매전문 의료기관, 보건
의료 관련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
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
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
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
다.

②·③ (생 략)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계약 -----
-.

제5조(시설의 운영) ① -----

----- 알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운영 능력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역보 건법」,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조 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등 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 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 여 정한 바에 따른다.	-----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 례」-----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기관 현판 제작 비용(개소당 350천원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연간 치매친화치과의료원 지정은 10개소 이하로, 현판 제작 등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참고자료]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목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15호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변경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범위의 확대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 (안 제1조)
- 출산장려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0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 ~ 2.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30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철상·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7명

☐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범위의 확대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 (안 제1조)
- 출산장려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0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 「모자보건법」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로,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을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과”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녀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를 “출산장려 지원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를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로, “중「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를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날인하여 매달”을 “날인하여 매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녀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3. ~ 5. (생략) 제6조(지원절차) ① (생략)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u>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과 ----- ----- 출산장려 지원에 ----- -----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
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
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③ (생 략)

<신 설>

----- 날인
하여 매달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
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권고적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 미 라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